

# 이 룰 디 엔 씨 주 식 회 사

우)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동 642-3) 문정SK V1 A동 3층 / 전화 02-6286-5362 / 전송 02-6286-5205

문서번호 : 이룰디앤씨 제2018-MH003호

시행일자 : 2018. 09. 04

받 음 : 인천광역시청

참 조 : 장애인복지과 신경주님 귀하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이천시 송정동205-3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 건

-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이천시 송정동205-3번지 일원 아파트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205-3번지 일원
  -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5층 13개동 아파트 총 7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장애인 배정세대수 : 22세대(기관추천 총 76세대 中 장애인 배정 세대수)

주택형 (전용면적/m <sup>2</sup> )	75	84A	84B	84C	TH84A	TH84B	PH84A	PH84B	계	비고
배정세대	8	9	2	2	1	0	0	0	22	특별공급신청일(예정) 2018.10.10(수) 08:00~17:30
계	8	9	2	2	1	0	0	0	22	

※ 특별공급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특별공급 청약신청 : 인터넷 신청 [www.ap2you.com](http://www.ap2you.com)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다.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49-1 이천 라온프라이빗 견본주택(TEL.031-633-8884)

라. 업무 협조 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 및 대상자 배정 회신  
(회신처: 팩스 031.634.9939 또는 E-Mail: [chan8224@naver.com](mailto:chan8224@naver.com) 담당 옥용준 팀장)

마.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동호수는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에서 선정되며, 특별공급 신청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당해거주자(이천시)가 우선하며, **관계기관은 추천인의 순번을 정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부. 끝.

이 룰 디 엔 씨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205-3 라온프라이빗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위치 :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205-3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2층~지상25층 13개동, 총 790세대 및 기타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10% 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 중소기업근로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청약예금 :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세대

(단 위: ㎡/ 세대)

구 분		75	84A	84B	84C	TH84A	TH84B	PH84A	PH84B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철거민· 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27	32	8	8	1	0	0	0	76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 당첨자 선정방법

- 대상기준 및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이천시)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우선 하며 해당지역내 경쟁시 당첨자 선정방법은 각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선정함. (따라서 추천경쟁률이 관계기관의 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사에 통보해야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 신청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의 1층을 우선 배정함[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배정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음]